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194

발의연월일: 2025. 1. 2.

발 의 자: 박성훈·이헌승·이종욱

김성원 • 안상훈 • 김기웅

김도읍 • 임이자 • 김종양

이상휘 · 조배숙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, 택시 운수종사자가 이를 어기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 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시·도지사가 부여한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법 체계상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음.

이에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등의 권한을 시· 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 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2항 등).

법률 제 호
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6조제2항 중 "국토교통부장관은"을 "시·도지사는"으로 한다.
제19조 중 "국토교통부장관은"을 "시·도지사는"으로, "및"을 "또는"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"제16조제2항, 제18조"를 "제18조"로 한다. 제23조제3항 중 "국토교통부장관이"를 "시·도지사가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)
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운전 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, 청문, 과태료 부과・징수는 각각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・도지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	제16조(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
항 등) ① (생 략)	항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	② <u>시·도지사는</u>
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	
을 위반하면 「여객자동차 운	
수사업법」 제24조제1항제3호	
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	
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	
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	
정지시킬 수 있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9조(청문) <u>국토교통부장관은</u>	제19조(청문) <u>시 · 도지사는</u>
제16조제2항 <u>및</u> 제18조제1항에	<u>또는</u>
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이나	
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려	
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	
제20조(권한의 위임) ① <u>제16조제</u>	제20조(권한의 위임) ① <u>제18조</u>
<u>2항, 제18조</u> 및 제23조제3항에	
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	
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	
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	
위임할 수 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과태료) ①・② (생 략)	제23조(과태료) ①・② (현행과
	같음)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	3
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	<u>시 · 도지사가</u>
부과・징수한다.	<u>.</u>